

청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합12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1 선고 2021나51007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합12988 판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배준모, 최대건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

담당변호사 이승연, 이윤진, 윤정은

변 론 종 결 2021. 4. 9.

판 결 선 고 2021.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2005. 11. 16. 접수 제85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의 차녀이고, 피고는 C의 장남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5. 11.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05. 11. 2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6.자 C으로부터의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C은 위 증여 당시 실어증 진단을 받고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C의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불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C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반복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축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은 2004. 6. 30.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였던 점, ② C은 2004. 5.경 전실어증을 진단받았고, 2005. 10.경 감각실어증을 진단받았는데, 감각실어증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까지는 되나 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고위 피질기능이 이상이 있는 상태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상태이고, 전실어증은 감각실어증과 함께 생각대로 말을 나오게 하는 고위 피질의 이상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된 운동실어증이 모두 발생하여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음하지도 못하는 상태인 점, ③ 실어증이 발생하면 언어 이해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의사결정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④ C은 2005. 1. 29.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을 개연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증여 또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C은 전실어증을 진단받은 이후인 2005. 7. 15. 및 같은 해 11. 8.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특히 2005. 11. 8.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으면서는 본인이 과거에 신청했던 ‘본인 외 인감증명서 발급금지’를 해제하기까지 하였다.

②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축탁 결과는 C이 사망한 이후 C의 생전 진료기록에 기재된 단편적인 산경학적 상태만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C 생전에 자세한 신경심리검사를 통한 인지기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위 감정 축탁 결과만을 근거로 C이 이 사건 증여 또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도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는 C의 장남 D과 혼인한 이후인 1981. 9. 2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서 C과 함께 40여년간을 거주해 왔다. D이 1990년경 가출한 이후로도 피고는 위 부동산에서 D과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며 시부모인 C과 F를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할 만한 나름의 경제적 동기도 있어 보인다.

④ 증여는 자신의 소유권을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법률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해하는 데에 고도의 정신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병렬, 판사 김환권, 판사 전보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충북 청주시 서원구 대 166.2㎡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위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주택

1층 73.65㎡

2층 49.68㎡

부속건물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변소

1㎡

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답 1329㎡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답 1673㎡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답 2939㎡6. 충북 청주시 흥덕구 답 1336㎡7. 충북 청주시 흥덕구 답 803㎡. 끝.